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091호(號) 1933(昭和 8)년 12월 28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643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3(昭和 8)년 12월 2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청어[鮮鯨]
- 2 발 역(發 驛) 부산(釜山), 포항(浦項)
- 3 착 역(著 驛) 구마산(舊馬山), 마산(馬山), 군북(郡北), 진주(晉州)(이상[以上] 포항발[浦項發]에 한[限]함) 및 대전(大田)보다 먼[以遠] 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역(各驛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4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탁송(託送)의 경우
조선총독부철도국선(朝鮮總督府鐵道局線) 내(內)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1
할(割) 5분(分) 감(減)
6천톤(千噸) 이상(以上) 탁송(託送)의 경우
동(同) 2
할(割) 5분(分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3(昭和 8)년 12월 28일부터
1934(昭和 9)년 4월 15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(所定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해 이전(以前)에 전기(前記) 수량(數量)
이상(以上)을 탁송(託送)한 자(者)에 대(對)해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
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할려(割戻)
함.
나 특별(特別) 톤수(噸數)에 의(依)해 출화(出貨)한 수량(數量)은 전호(前
號)의 수량(數量)에 가산(加算)하는 것을 득(得)함.
다 본(本) 임륜(賃率)에 대(對)한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톤수(最低噸
數)는 20톤(噸)으로 함.